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선거벽보 디지털 게시판 설치 등〉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50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태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11.
3. 회 부 일 : 2025. 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첩부된 선거벽보는 약 117만 장이고 배부된 선거운동 현수막은 6만6000장에 달하며, 1천톤 이상의 폐현수막 쓰레기가 발생했음에도 재활용률은 24.5%에 그쳤음.

선거벽보는 통상 진하게 인쇄돼 잉크가 잘 빠지지 않고 코팅 처리되어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대부분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음. 현수막의 경우 폴리에스터,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되어 매립시 잘 썩지 않아 화학염료 유출로 토양이 오염될 수 있고, 소각을 하더라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해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에, 선거벽보 및 현수막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 등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벽보를 디지털 화면

에 송출하는 방식의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안 제64조의2 및 제6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전자적 문서로 전환된 선거벽보(디지털 게시판)를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경우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제작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64조의2(선거벽보용 디지털 게시판 설치·운영)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적 문서로 전환된 선거벽보를 디지털 화면에 송출하는 방식으로 제64조에 따른 선거벽보 첩부를 대신하는 선거벽보용 디지털 게시판(이하 “디지털 게시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운영하기 곤란한 장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는 선거벽보를 첩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제64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디지털 게시판 설치·운영에 관한

<신 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⑥ (생 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者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
0萬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신 설>

사항

2. 선거벽보를 전자적 문서로 전환한
파일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운영하기
관련한 장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선거벽
보를 첩부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제
출하여야 하는 선거벽보의 수량

④ 선거벽보 작성 및 첩부에 관하여는
제64조를 따른다.

⑤ 디지털 게시판의 설치·운영, 선거
벽보에 관한 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한다.

제67조의2(친환경 소재 사용) 누구든
지 이 법에 따른 선거벽보를 작성
하거나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화학적인
으로 분해가 되거나 재활용이 가능
한 소재로 제작된 선거벽보나 현
수막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67조의2(친환경 소재 사용)
를 위반하여 생화학적으로 분해

	<u>가 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 이외의 소재로 제작된 선거벽보 나 현수막을 사용한 자</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선거벽보, 현수막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데, 선거벽보의 경우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경력 등을 게재하여 등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64조제1항).²⁾

또한, 현수막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법 제60조의3제1항),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1) “첩부”란 발라서 붙임을 의미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제64조(선거벽보)**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성명·기호(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후보자외의 자의 인물사진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등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67조제1항).³⁾

《선거벽보 및 현수막 예시》

구 분	내 용	
선거벽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벽보	국민의힘 대선 선거벽보
		
현수막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현수막	
		

3)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제67조(현수막) ①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그런데, 선거벽보는 종이류에 해당하여 재활용될 것 같아도 통상 진하게 인쇄되거나 코팅 재질로 제작되어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물로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임.⁴⁾

또한, 현수막의 경우 그 재질이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테드롱, 면으로 구성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나, 수거량 대비 재활용 수요처가 적고 수거·운반이 용이하지 않아 재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⁵⁾

특히, 재활용되지 못한 폐현수막은 플라스틱처럼 잘 썩지 않아 소각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음.⁶⁾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벽보의 첩부장소는 약 83,000여 곳으로 첩부수량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기준 약 119만 장에 달하고, 현수막의 경우 별도로 집계된 통계자료는 없으나,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각각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선거용 폐현수막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8년~2022년 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13,985톤이며 재활용률은 30.2%에 불과했음.⁷⁾

이에 개정안은 종이 선거벽보 외에 전자적 문서로 전환된 선거벽

4) YTN(2024.4.12.), “쏟아지는 선거 폐기물...재가공해도 화학제품에 건강 우려”

한국경제(2024.4.12.), “모으면 지구 두 바퀴...재활용 안되는 선거 폐기물에 골머리”

5) 환경부 보도자료(2020.4.9.), “현수막 등 총선 선거홍보물 재활용 대책 추진”

경남도민신문(2020.6.9.), “창원시, 환경부 폐현수막 재활용계획 평가 장려”

6) JTBC(2023.10.11.), “선거철보다 더한 현수막 공해...상반기에만 2733톤 폐기”

머니투데이(2024.4.6.), “현수막만 문제가 아니네...재활용도 안되는 선거 쓰레기 쏟아진다”

7) 임준배·조민주, “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제2100호(2023.6.12.)

보(디지털 게시판)를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경우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제작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디지털 게시판을 통해 종이로 작성되는 선거벽보의 양을 줄이고, 종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경우에도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제작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디지털 게시판의 설치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⁸⁾ 친환경 소재로 제작되는 선거벽보 및 현수막의 경우 야외에서 장시간 노출시 내구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⁹⁾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제작한다 할지라도 재활용 수요처 및 수거·운반의 용이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현재 폐기되고 있는 폐현수막과 같이 여전히 재활용이 어려울 가능성 역시 존재함.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화 여부에 대해서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막을 필요성과 디지털 게시판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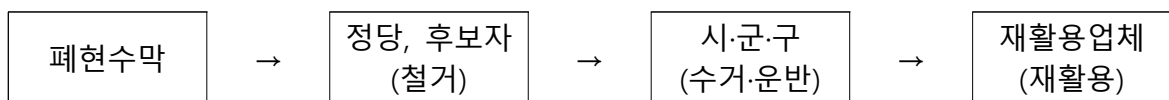
8)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대하여 디지털 게시판의 설치와 재활용 소재 사용 의무화로 선거벽보 및 현수막 제작비용이 상승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선거벽보용 디지털 게시판의 가격, 수량과 친환경 소재의 범위, 단가, 이를 사용한 선거벽보 및 현수막의 통상 거래가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하다는 입장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9) 현재 선거벽보를 재활용이 어려운 코팅 재질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코팅 처리가 방수 기능을 제공하며 찢어짐과 구김에 강해 내구성이 높기 때문임.

소재의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의 입법화와는 별개로 현재 재활용률이 저조한 폐현수막의 사례에서 보듯이 선거가 끝난 후 선거홍보물을 효과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 기업과 연계하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재활용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재활용 기업 간의 협력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임.¹⁰⁾

《현수막 재활용 시스템 예시》



※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20.4.9.), “현수막 등 총선 선거홍보물 재활용 대책 추진”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벽보 및 각종 선거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할지 여부는 선거비용 증가, 환경오염 방지 필요성, 관련 제작업체 현실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2

10) 환경부는 아래 보도자료에서 폐현수막 등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환경부 보도자료(2020.4.9.), “현수막 등 총선 선거홍보물 재활용 대책 추진”